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8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과, 사료값 인상과 소고기·우유소비의 감소로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 도축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 방침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됨에 따라 시세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

□ 주요골자

-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여 적용함.
-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.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중 “60제곱미터이하인”을 “85제곱미터이하인”으로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)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 단,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.
- ③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(신 설)	<p>제14조의2(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득축에 대한 감면)소득을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축하는 소득의 도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자가소비용으로 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소득세를 추징한다.</p>